

의안번호	2126114
의 퇴 인	윤미향의원
회 답 일	2023.10..
추계번호	23D4517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3호 (정의)	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제3항 신설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)	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3호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제3항 신설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산림사업 시행 등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의(안 제2조 제3호)

- 산림사업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을 하여야 하고,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－ 현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범위에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될 경우 정부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·시행과 발생원인 분석,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,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,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
 - － 또한 현행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유해·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, 조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- 다만, 산림사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, 산림안전과 관련한 기존 사업의 종류, 사업별 확대 여부 및 범위, 신규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검토하거나 예측한 자료 등이 없어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산림청의 산림재해 대책(1931-308),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(1544-306), 산사태재난 경계피난(1939-301)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, 각각 2023년 예산안 기준 200억원, 58억원, 119억 6,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□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(안 제9조제3항 신설)

-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,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

장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, 관련 재
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